

[공모펀드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악사 로보테크증권투자신탁 1호(H)[주식]

나. 변경 시행일 : 2023년 10월 26일

다. 변경 내용 :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1등급' 25.40% -> 실제 수익률 변동성 '2등급' 21.94%)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제도 과세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전	정정후
용어 변경	<u>대차대조표</u> <u>한국예탁결제원</u>	<u>재무상태표</u> <u>전자등록기관</u>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 (생략) ---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 (생략) ---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표시</u> 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발행</u> 한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u> 이 납입된 경우--- (생략) --- <u><이하 생략></u>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 원본 전액</u> 이 납입된 경우 --- (생략) --- <u><이하 현행과 동일></u>
제 14 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u>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한국예탁결제원</u> 은 관련법령·신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 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u>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

	<p>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 (생략) ---</p> <p>1. ~2. <생략></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u>은 --- (생략) ---</p> <p><이하 생략></p>	<p>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 (생략) ---</p> <p>1. ~2. <현행과 동일></p> <p>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u>은 --- (생략) ---</p> <p><이하 현행과 동일></p>
제 15 조(자산운용지시 등)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 (생략)----- 그 투자신탁재<u>산</u>으로 <이하 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 (생략)----- 그 투자신탁재<u>산</u>을 한도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p>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② --- (생략) --- (<u>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u>) --- (이하 생략)---</p>	<p>② --- (생략) --- (<u>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u>) --- (이하 생략)---</p>
제 32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p>②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신설></p>	<p>②집합투자업자는--- (현행과 동일) ---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p><신설></p>	<p>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p> <p>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p>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p>① --- (생략) ---</p>	<p>① --- (현행과 동일) ---</p>

<p>해지)</p>	<p>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 (생략) ---</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u> --- (이하 생략) ---</p>	<p>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 (현행과 동일) ---</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u> --- (이하 현행과 동일) ---</p>
<p>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p>	<p>① --- (생략) ---</p> <p>3. <신설></p>	<p>① --- (현행과 동일) ---</p> <p>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다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p>
<p>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② --- (생략) ---</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p> <p>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생략) ---</p> <p>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p>	<p>② --- (현행과 동일) ---</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p>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u>법시행령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u>에 한한다)</p> <p>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u>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현행과 동일) ---</p> <p>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시행령 제81조</p>

	<p>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생략) ---</p> <p>⑤ --- (생략) ---</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2. <생략></p> <p>3. <신설></p> <p>⑥ --- (생략) ---</p> <p>3. <신설></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u> --- (이하 생략) ---</p>	<p>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u>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현행과 동일) ---</p> <p>⑤ --- (현행과 동일) ---</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2. <생략></p> <p>3. <u>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u></p> <p>⑥ --- (현행과 동일) ---</p> <p>3. <u>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u></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u> --- (이하 현행과 동일) ---</p>
--	--	---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 (이하 생략)--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 (이하 현행과 동일)--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대상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대상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증권 ----(생략)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주1) ~주2) <생략> <신설>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증권 ----(현행과 동일)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단기사채등”) 주 1) ~주 2) <현행과 같음> 주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용어변경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나. 투자제한 투자한도초과	---(생략)---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현행과 동일)---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다. 기타위험</p>	<p>※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위험</p> <p>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위험</p> <p>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p> <p>※증권대차 거래 위험</p> <p>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투자위험 등급 (1) 등급</p> <p>매우 높은 위험 수준</p> <p>교보약사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25.40%)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투자위험 등급 (2) 등급</p> <p>높은 위험 수준</p> <p>교보약사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21.94%)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을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용어변경</p>	<p><u>대차대조표</u></p>	<p><u>재무상태표</u></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나. 환매</p> <p>(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p>	<p><추가></p>	<p>* 환매연기사유</p> <p>-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p>유가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p>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 별 예시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p>나. 과세</p>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p><별첨1 참조></p>	<p>나. 과세</p>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p><별첨 1 참조></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p>1. 재무정보</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세전 기준)</p>		<p>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p> <p>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p> <p>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p>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p>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p>라. 운용자산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p>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p> <p>나. 주요업무</p> <p>(2) 의무와 책임</p> <p>1) 의무</p>	<p>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p> <p><신설></p>	<p>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p> <p>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총회등</p>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연기투자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가. 의무해지</p>	<p>-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p>	<p>① --- (생략) ---</p> <p>-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① --- (현행과 동일) ----</p> <p>- 최초로 설정한 후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업무보고서</p> <p>(2) 자산운용보고서</p>	<p>① --- (생략) ---</p> <p>- <u>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u></p> <p>- <u>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u></p>	<p>① --- (현행과 동일) ----</p> <p>-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u></p> <p>- <u>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u></p>

	<p><u>에 관한 사항</u> <u><신설></u></p> <p>② --- (생략) --- <u>-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 (이하 생략) ---</u></p>	<p><u>-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u></p> <p>② --- (현행과 동일) ---- <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 (이하 현행과 동일)</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 투자신탁종류의 변경</p> <p>- 집합투자업자의 변경</p> <p>-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p> <p><u><신설></u></p>	<p>- 투자신탁의 종류(<u>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u>)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 <u>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u>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u> 다. 「<u>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u>」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u></p> <p>- <u>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u></p> <p>- <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p>	<p>-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생략></p> <p>-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p> <p>-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생략) ---</p> <p>-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생략) ---</p> <p><신설></p>	<p>-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p><현행과 동일></p> <p>-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u>법시행령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경우에 한한다</u>)</p> <p>-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u>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현행과 동일) ---</p> <p>- 설정 및 설립되고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현행과 동일) ---</p> <p>- <u>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 <u>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u> <u>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u> <u>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u></p>
--	---	---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별첨 1>

(변경 전)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 만원 한도까지 12% 세액공제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변경 후)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연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 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